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50 발의연월일: 2025. 1. 31.

발 의 자:이인선·고동진·배준영

김태호 · 최수진 · 김정재

이달희 · 김기현 · 성일종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조세특데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.

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제13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·제2호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제13조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벤처투자회사(이 하 "벤처투자회사"라 한다) 및 창업기획자(이하 "창업기 획자"라 한다)가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 업(이하 "창업기업"이라 한 다), 벤처기업 또는 「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| 에 따 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(「중 소기업기본법 |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. 이하 "신기술창업전문회사"라 한 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----2030년 12월 31일-----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
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이하 "신기술사업금융업자"라 한다)가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자(이하 "신기술사업자"라 한다)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- 3.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
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「상법」상 유한회사(이하이 조에서 "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"라 한다)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(이하 "벤처투자조합등"이라한다)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가. ~ 마. (생 략)
- 4.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

2.	
	<u>2030년 12월 31일</u>
3.	
	<u>2030년</u>
	<u> </u>
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4.	

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(이하 이 조에서 "기금운용 법인등"이라 한다)이 벤처투 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.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 다)에 상장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, 제16조의2,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"코넥스상장 기업"이라 한다)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.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 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

2030년
<u>12월 31일</u>
5
2030년 12
<u></u> 월 31일
6
<u>203</u>
0년 12월 31일

지분

- 7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(이하"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"이라 한다)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식 또는 출자지분
- ②·③ (생 략)
- ④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 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 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⑤ (생략)

7
2030년 12월 31
<u> 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(4)
<u>2030년 12월 3</u>
1일
⑤ (현행과 같음)